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17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박덕흠 · 구자근 · 조지연
박상웅 · 김소희 · 김위상
이종욱 · 신성범 · 서천호
안상훈 · 김성원 · 김종양
백종현 · 윤영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하여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이 마치 국내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7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계정”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를 식별하고 이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능적 단위로서 이용자 식별부호(이용자가 설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문자, 숫자 또는 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에 결합된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장에 제4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7(이용자 계정 정보의 표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여야 한다.

1. 계정 생성일
2. 이용 및 접속 장소의 국가명

3. 이용자 식별부호의 변경 이력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7 및 제4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표시·공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4조의27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계정”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를 식별하고 이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능적 단위로서 이용자 식별부호(이용자가 설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문자, 숫자 또는 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에 결합된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u> 5.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44조의27(이용자 계정 정보의 표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
업자”라 한다)는 해당 정보통
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여야 한다.

1. 계정 생성일
2. 이용 및 접속 장소의 국가명
3. 이용자 식별부호의 변경 이
력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략) <u><신설></u> <u><신설></u> <u>4의5. · 4의6.</u> (생략) 5. ~ 24. (생략) ④ (생략)	③ ----- ----- -----. 1. ~ 4의4. (현행과 같음) <u>4의5. 제4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표시·공개하지 아니한 자</u> <u>4의6. 제44조의27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u> <u>4의7. · 4의8.</u> (현행 제4호의5 및 제4호의6과 같음) 5. ~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